

문서번호	유통관리팀-2724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9.09.26
공개여부	공개

★담당자	팀장	강서지사장
		09/26
오동관	최영규	노계호
협 조		
감 사		

## 강서지사 '불법 거래 신고센터' 운영 계획(안)

2019. 9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
유통관리팀

# 강서시장 ‘불법 거래 신고센터’ 운영 계획(안)

## 추진 목적

수탁 판매 원칙 위반, 점포 전대, 허가권 대여 등 각종 불법 거래 행위 신고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강서시장 거래질서 강화

## 1 추진 배경

- 거래질서 합동 단속 실시 이후 지속적인 거래질서 확립 추진
- 공사 자체 단속 시 불법 거래 행위 적발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 유통인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행위 자정작용 유인

## 2 현황 및 문제점

- 불법거래 신고 현황
  -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
    - [고객의 소리]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불법 거래 신고 가능
    - [신고센터-부정부패신고] (사)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을 통하여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며 이후 공사 감사실로 신고내용 이첩 후 해당 유통담당 부서로 재이첩 됨(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공사 이첩 시 신고자 정보 미제공)
  - 유선을 통한 신고
    - 공사 민원실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를 판단하고 해당 부서로 연결 후 신고 가능(민원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익명 신고도 접수)

## □ 공사 자체 불법거래 행위 단속 현황

- 야간 상장지도반을 통한 수시 단속과 유통관리팀 직원 투입을 통한 특별 단속이 가능하나 단속을 위한 순찰 시 유통인들의 은폐 행위가 발생함
- 적발 시에도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행위가 포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통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단속이 어려움

## □ 문제점

- 민원 신고 시스템이 공사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을 경유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강서시장만을 위한 별도 신고센터가 부재함
- 불법거래는 유통인 직접 신고 시 행위 입증 및 단속 대상 특징이 용이하나, 유통인들이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고 신고자 본인의 신분 또한 밝히기를 꺼려하여 신고를 주저하거나 하지 않음

## **3** 개선방안 및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

### □ 개선방안

- 홈페이지나 민원실을 경유하지 않고 유통관리팀 유선 또는 방문 접수
-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확실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 접수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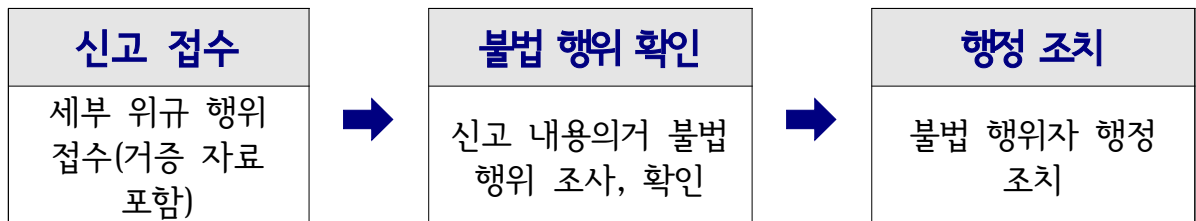
### □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

- 신고처 : 공사 유통관리팀(경매시장 ☎6055, 시장도매인시장 ☎6054)
- 신고 방법
  - 공사 유통관리팀 방문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신고내용 접수

- 대상 불법 행위 : 수탁 판매 원칙 위반, 불법 대여·점유 행위 등
  - 불법 거래 : ①시장도매인 ↔ 중도매인 간 거래<sup>1)</sup>, ②중도매인 직접 위탁, ③장외 거래
  - 불법 대여 : ①중(시장)도매인 허가권 대여, ②점포 전대
  - 불법 점유 : ①중(시장)도매인 이탈영업, ②매매참가인 장내영업, ③무허가 상인 불법 영업
  - 기타 : 농안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
- 신고 내용
  - 신고자 본인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, 즉시 행정조치가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 제시 시 익명 신고 가능
  - ※ 불명확하고 반복적이며 구체성이 없는 익명 신고는 접수 거부
  - 불법 행위자 인적 사항, 불법 행위 내역, 불법 행위 입증 자료 등
  - 불법 행위 입증 자료는 불법 행위 확인 및 행정 처분이 가능한 서류 (사진, 동영상, 녹취, 전대 및 허가권 대여 계약서, 월세 입금 서류 등)
- 신고자 보호
  - 불법 행위 조사, 조치 등 과정에서 신고자 일체 정보 외부 유출 금지

□ 운영 계획

- 운영 시기 : 2019. 10. 1(화)부터
- 접수 및 조치 절차



1) 2019. 8. 2.~ 8. 7.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43개사 및 인터뷰 8개사 실시 결과, 시장도매인 → 중도매인 거래 : 1.4% / 중도매인 → 시장도매인 거래 : 2.6% 수준으로 조사됨  
※ 2012년 KREI 용역 시 시장도매인→중도매인 거래는 10~15%, 중도매인→시장도매인 2~3%를 추정 하였으나 현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 됨

## 4 행정 사항

### □ 신고센터 운영·실시 홍보

-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내용 홈페이지 게시(전산정보팀)
- 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조합 등 유통인 단체 문서 발송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(유통관리팀)
- 팀 사무실 입구, 불법 거래 신고센터 안내판 부착(유통관리팀)



- 보도 자료 배포(홍보팀)

### □ 예산 사항

- 소요예산 : ---천원
- 유통관리팀 소모품비 사용

	단가	단위	금액
소모품비(현수막)	---	5개	---
신고센터 안내판	---	1개	---
소계	(부가세, 소득세 포함)		---

- 붙임 1. 불법 거래 신고서 양식 1부  
2. 불법거래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견적서 1부. 끝.

[붙임 1. 불법 거래 신고서 양식]

## 불법 거래 신고서

신고자

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상인 구분			상호		
주소					

불법 행위자

상인 구분		상호	
허가번호(신고번호)		대표자	
불법 거래 행위		연락처	

○ 해당 신고 대상 불법 거래 행위에 체크(√)

- 불법 거래 : ① 시장도매인 ↔ 중도매인 간 거래, ② 중도매인 직접 위탁, ③ 장외 거래

- 불법 대여 : ① 중(시장)도매인 허가권 대여, ② 점포 전대

- 불법 점유 : ① 중(시장)도매인 이탈영업, ② 매매참가인 장내영업, ③ 무허가 상인 불법 영업

- 기타 : ① 농안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

불법 행위 내용(육하 원칙에 의거 작성, 거증 자료 첨부)

○ 행위 일시

○ 행위 장소

○ 행위 내용

○ 기타 상세 서술

신고일 : 201 . . .

신고자 : (인)

**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귀하**

## [붙임 2. 불법거래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견적서]